

의안
번호

443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
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
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04. 16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443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4. 04.

라. 회부일자 : 2025. 04. 10.

2. 제안이유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고독사의 정의가 2024. 2. 6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고독사의 정의에 따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함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2. 27. ~ 2025. 3. 19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2024. 2. 6자로 일부개정된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고독사” 정의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법률안 개정 취지에 따르면 ‘고독사’의 경우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속에 홀로 사망한 뒤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, 개정 전 고독사 정의에는 ‘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죽음의 시점이 불명확하였음. 이에 ‘시신 발견 시점’의 요건을 삭제하여 ‘임종사’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개정한 상위법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2024. 2. 6 개정)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고독사"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을 말한다.<개정 2023.6.13>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13., 2024. 2. 6.>

□ 주요내용

○ 안 제2조(정의) 정비

고독사 정의 시점을 ‘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때’에서 ‘임종사’로 변경한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2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임 종하는 것 -----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어야 고독사로 인정되었던 현행 조례상 ‘일정한 시간의 경과’라는 불명확한 시신 발견 시점요건을 삭제하여 ‘임종시’로 명확하게 개정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